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61호 2020. 4. 14.(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44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445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4
남해군 조례 제2446호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8
남해군 조례 제2447호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남해군 조례 제2448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1
남해군 조례 제2449호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6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33호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정부개정훈령 34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46호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 79
남해군 고시 제2020-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2
남해군 고시 제2020-52호	도로명주소 고시 83
남해군 고시 제2020-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5
남해군 고시 제2020-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6
남해군 고시 제2020-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7
남해군 고시 제2020-61호	설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고시 88
남해군 고시 제2020-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90
남해군 고시 제2020-63호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고시	.. 9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475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4
남해군 공고 제2020-492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 사항 공고 99
남해군 공고 제2020-50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00
남해군 공고 제2020-50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01
남해군 공고 제2020-528호	남해군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2
남해군 공고 제2020-53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16
남해군 공고 제2020-53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17
남해군 공고 제2020-532호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창선단항공영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18
남해군 공고 제2020-534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120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6, 행정 3046)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44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남해군의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일반재원”이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재정안정화 기금 외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 및 제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군의 일반회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비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출요건이 발생한 경우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 중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는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45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재난·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남해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활동”이란 생활주변과 이웃의 위험·취약요인을 발굴·신고하여 남해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마을안전 지킴이”란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안전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의 활동의견을 수시로 수집하고, 안전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운영계획) ① 군수는 매년 다음 연도의 지킴이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은 지킴이의 책무, 교육·훈련 및 시기별 재난환경, 활동보상금의 지급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지킴이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마을 사정에 밝은 남·여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에 국한하여 행정리마다 지킴이 1명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킴이는 그 마을의 자연과 생활특성, 구성 세대의 일반적인 사정에 밝아야 한다.

③ 군수는 지킴이가 제7조의 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킴이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킴이의 임기는 전임 지킴이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활동) 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활동을 한다.

1. 재해·재난·사고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홍보
2. 생활주변과 이웃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3. 안전취약계층의 관찰 및 취약요인 등의 신고
4.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지킴이는 제1항의 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개인의 인권 및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항
2. 특정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피하거나 이웃 간의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지시 등을 통해 주문하거나 권고하는 사항

제8조(증표) 군수는 별지 서식의 지킴이 증표를 제작·발급하며, 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활동을 하는 경우 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군수는 매년 지킴이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킴이 교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활동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킴이의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마을안전 지킴이 증표

(앞면)

 마을안전 지킴이
① 사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80px; margin: 10px auto;"></div>
남해군 ④
② 성명 : 0 0 0
③ 남해군 읍면행정복지 센터

(뒷면)

⑤ 발급번호 성 명 : 0 0 0 생년월일 : . . . 주 소 : 위 사람은 「남해군 마을 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안전 지킴이임을 증명함 . . . ⑥ 남해군수 000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1. 마을안전 지킴이 증의 규격은 5.5cm(가로)×8.5cm(세로)로 한다.

2. 마을안전 지킴이 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
- ② 성명
- ③ 소속기관명
- ④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⑤ 발급번호 : 남해군-00
-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

남해군 조례 제2446호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경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 5.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제안의 개요
-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 5.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1. 경관계획의 필요성
-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5. 자원조달 방안
-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한 주민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6. 야간 경관관리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8. 경관지구,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9.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이하 “공청회” 라 한다)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2. 옥외광고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지역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지역경관의 기록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4.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의 적절성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군에 소재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경관 관련 전문가 등 군수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및 연구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자는 제외한다)·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대상지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경관협정의 승계
-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 3.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의 합의사항
-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2.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연구
-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
-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사업명
-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 3.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
- 4. 사업비용의 조달 계획
- 5. 지원되는 사업비용의 집행 및 상환 계획
- 6.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제1호의 심의대상 공공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제2호의 심의대상 일반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3. 경관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사항
- 2.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도로시설 사업
- 3.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
- 4.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
- 5. 높이 10m 이상인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
- 6. 별표에 따른 자문대상 건축물
- 7.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심의 및 자문 신청) 발주청 및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설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남해군 공동위원회 심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3. 위원회 심의·자문 도서

제31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제2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경관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건축물 경관심의 · 자문 대상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6호 관련)

구 분	건축물의 경관심의 · 자문대상	예 시	심의대상 규모	자문대상 규모
1. 공 공 건축물	공공청사	군청,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00㎡ 이상 ~ 1,000㎡ 미만
	군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도서관, 복지회관, 예술회관, 박물관 등		
	군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여객선터미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화장시설	화장장, 납골당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일 반 건축물	① 도시계획도로 또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300m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단, 도시지역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
	② 해안변으로부터 200m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단, 부속건축물, 창고, 축사 제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200㎡이상 ~ 1,000㎡ 미만
	③ 독일마을 경계로부터 1km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가천다랭이 마을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 1,000㎡ 미만
	※ “연면적”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연면적 산정 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남 해 군 공 보

(18) 제 661 호

2020년 4월 14일

[별지 제1호서식]

경관심의·자문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성 별	남 / 여
	주 소(사무실)	(☎)		
사업구분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심의 <input type="checkbox"/> 자문		
	대상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기반시설사업 <input type="checkbox"/> 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 업 량			
	총사업비	억원(국·도비: 원 / 군비: 원)		
신청내용				
남해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div>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별표 제2호 일반건축물의 자문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구비서류로 한정, 다만 색채, 형태 등 자문을 위한 내용 파악이 불가할 때는 보완요청 가능) 2.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별지 제2호서식]

남해군 공동위원회 [] 심의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 신청하지 않음	[] 신청하지 않음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 신청하지 않음	[] 신청하지 않음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 신청하지 않음	[] 신청하지 않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 신청하지 않음	[] 신청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m ²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대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남해군 경관 조례」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2447호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에 따른 남해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를 “제3조에 따라 확정된 건강도시 사업”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48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물섬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쇼핑몰"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인 보물섬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내에 사업장을 둔 남해군민 또는 업체(「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한정한다)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쇼핑몰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배송을 담당한다.

③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웹사이트 구축·운영) 군수는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2.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상품. 다만, 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판매방법)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한다.

제7조(입점절차) 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입점을 승인할 때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쇼핑몰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신청이 접수 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입점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5.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침해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6.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쇼핑몰 운영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의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물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 등의 문제로 쇼핑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쇼핑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쇼핑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남해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 4.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쇼핑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상품배송) 상품은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한다. 다만, 쇼핑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쇼핑물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쇼핑물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쇼핑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20조(홍보) ① 군수는 쇼핑물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쇼핑물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마케팅

② 홍보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① 군수는 쇼핑물의 홍보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쇼핑물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2. 회원가입 촉진 등을 위한 행사
3. 웹사이트·모바일 및 SNS의 개설(성능향상을 포함한다) 또는 개편을 기념하는 행사
4. 그 밖의 웹사이트 홍보 및 쇼핑물 판촉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쇼핑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단, 체험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또는 포상, 활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쇼핑물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배송비
2. 상품포장재 개발·제작비
3. 그 밖에 쇼핑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49호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남해군 읍·면에 설치 및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으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되어, 군 수가 위촉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 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협의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2. 수탁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 3.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관·단체의 임직원

② 주민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위촉한다.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회의 장이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회의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회계업무 등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참석 주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제15조에 따른 다음연도 읍·면의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자치회장이 주민총회를 소집하려면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주민자치회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하고,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30일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주민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치계획안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읍·면 자치계획안(이하 “자치계획안”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자치계획안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위원 자격이 없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원 등)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때에는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그 업무 등은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회가 승계한다.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33호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전부 개정훈령을 발령한다.

2020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남해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군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사부서"란 근로자의 정수와 현원을 관리하는 행정과를 말한다.
5. "예산부서"란 근로자의 급여 등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
6. "소속부서"란 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
2. 기간제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③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방법으로 근무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직종의 구분)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지원직 :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2. 시설관리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및 일일 근무시간 중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않는 현장근무자와 방문민원인 안내 등 관리적·서비스 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3.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 유지,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4. 환경미화원 : 도로, 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처리 등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5.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되어 시설물 경비·감시 및 교통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5조(채용기준) ① 공무원직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 할 수 있다.

- 1. 단순노무, 조무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 2. 업무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업무
- 4. 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②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지속적 업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2. 휴직·과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공무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공무원이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장 정수의 책정 및 관리

제6조(공무원직근로자 정수책정) ① 소속부서에서 공무원직근로자의 정수를 새로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수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가 소속부서로부터 정수책정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근무내용, 채용 필요성, 인원, 사무량 등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부서와 소속부서에 통보한다.

③ 예산부서에서는 인사부서에서 책정한 정수의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와 소속부서에 통보한다.

④ 공무원직근로자의 직종별 정수책정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정수책정의 기준 등) 인사부서는 근로자의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소속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근로자의 정수를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감축하여야 한다.

1.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될 경우
2. 정수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이 발생한 경우
4. 채용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인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한다.

1. 공무원근로자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2. 공무원근로자 관리카드 : 별지 제3호서식
3. 제9조제5항의 구비서류
4. 제11조제1항의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② 소속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휴가사용대장 : 별지 제6호서식
2. 그 밖에 고용 관련 서류

③ 공무원근로자 관리카드, 휴가사용 대장, 휴가원 등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절차)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근로자 및 청원경찰은 소속부서의 의견을 들어 인사부서에서 채용한다.

④ 공무원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사업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장,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인사부서에서는 공무원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채용목적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기관에 채용예정자의 신원조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신원진술서 2통(신원조사 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 시)
4.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정함) 1부.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
- ⑥ 공무직근로자의 소속 부서에서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⑦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소속 부서에서 하며, 채용 전 반드시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① 소속부서의 장은 매년 8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인원을 특정하고, 근로자의 직종, 채용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사전심사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제 세부운영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 인사부서는 9월 중순까지 소속부서 및 예산부서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예산부서는 관리부서의 사전심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속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인사부서는 소속부서가 승인받은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근로계약) ① 채용예정 근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무원근로자는 인사부서에, 기간제근로자는 소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서 1부, 근로자가 1부를 각각 보관한다.

제12조(직종 및 보직변경, 전보) ① 인사부서에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 및 보직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 내 같은 직종에서 같은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 체결할 수 있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동일 부서 또는 동일 직종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보는 동일 직종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종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인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직종 간 전보를 하였을 경우 급여 하락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호봉체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기본급의 금액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확정한다.

제4장 복무관리

제13조(기본원칙) 근로자는 소속부서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고,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이탈금지) 근로자는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5조(친절·공정의 의무) 근로자는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청렴의 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근로자는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18조(품위유지의 의무)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겸직금지) ① 근로자는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군의 재산상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② 근로자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20조(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군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21조(신분증 등) ① 인사부서와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신분증에는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원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반납한다.

제22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근로일, 근로 및 휴게 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직종·계절에 따라서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휴일) ① 소속부서의 장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유급휴일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일요일로 하고 지정휴무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지정휴무일로 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5조(근로시간의 변경, 연장근로)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복무) ① 근로자는 근로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대장 등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시스템에서의 출근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휴가원을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근로자가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7조(근무성적평정)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근로자(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소속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은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평가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인사관리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출장, 조퇴, 외출) 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출장을 실시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소속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휴가원을 제출하여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 외출로 처리한다.

제29조(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에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30조(연차유급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특별휴가)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항 별표 3의 기준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준다.

제32조(임산부의 보호) ①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의 앞뒤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③ 제1항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④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⑤ 여성 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⑥ 생후 1년 미만의 어린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3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를 넘는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35조(병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로자에 한정한다.

1.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해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 ②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누계 또는 연속 5일 이상의 병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유급으로 한다.
- ④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유급병가를 제외한 연중 5일 미만의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제36조(휴직)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 1년 이내
2.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 의무수행기간
3. 제1항제3호 : 3개월 이내
4. 제1항제5호 : 3년 이내

제37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8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제36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병원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39조(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산입) ① 제36조제2항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1년 이하의 육아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40조(신분보장)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41조(정년 등) ① 공무원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 시 근무 상한 연령을 줄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정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42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본인이 사망, 정년에 달하였을 때
2.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이 종료나 폐지되었을 때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43조(퇴직의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하기 10일 전까지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퇴직급여)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근로자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택구입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출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③ 그 밖에 퇴직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청원경찰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45조(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2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 제46조(해고 등의 제한)**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정직·감봉·견책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 ②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 제47조(해고의 예고)**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고를 제외한 해고를 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임금 등

- 제48조(임금)** ① 근로자의 매 회계연도별 임금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통계법」에 따른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에서 전년도 단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군수가 결정한다.
- ② 임금은 공무원근로자는 매월 20일, 기간제근로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 할 수 있다.

- 제49조(시간외근무 등에 따른 가산금)** 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오후6시부터 10시 사이의 근로),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사전명령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과 징계

- 제50조(표창)** ① 군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방법 및 절차는 「남해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51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줄여 지급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하루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2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제17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7. 소속부서장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부서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구성되고 인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이 구성원 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인사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보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및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5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공무원근로자(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사본
3.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소속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양정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 절차 및 관리)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 연장 할 수 있다.
3. 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혐의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부부터 15일 이내에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부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 결정사항을 인사부서의 장과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원본을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및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교부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술권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에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서는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서면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의 감경) 징계혐의자가 제50조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줄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음주운전 사고 비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1조(징계사유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2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르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 3의 사유발생 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8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제6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또는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소속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소속부서의 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소속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

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소속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장 교육 훈련

제67조(교육훈련 등)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여성에게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68조(성희롱의 예방) ① 소속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은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다.

제10장 안전과 보건

제69조(안전관리) ①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② 근로자는 제74조 각 호의 안전수칙 및 산업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70조(작업안전용품)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71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건강진단)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 전·수시·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인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3조(질병자의 근로 제한·금지)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에 따른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구역 출입 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리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를 것
7.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8.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 할 것

제75조(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 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6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장 재해보상

제77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8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79조(업무 외의 재해)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장 기타

제80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남해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별표1의 “문화청소년과”를 “청년혁신과”로 하고, “관광진흥담당관”을 “문화관광과”로 하며,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한다.

[별표 1] (제6조제4항 관련)

공무직근로자 정수

(단위 : 명)

부서별	계	행 정 지원직	시 설 관리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189	68	64	13	30	14
기획예산담당관	1	1	0	0	0	0
행정과	8	3	4	0	0	1
민원봉사과	8	8	0	0	0	0
주민복지과	23	13	9	0	0	1
청년혁신과	13	11	1	0	0	1
재무과	5	3	2	0	0	0
문화관광과	17	1	14	0	0	2
지역활성화과	1	1	0	0	0	0
해양수산물과	6	1	5	0	0	0
체육진흥과	12	0	12	0	0	0
재난안전과	0	0	0	0	0	0
도시건축과	1	1	0	0	0	0
건설교통과	18	4	0	13	0	1
환경녹지과	36	1	4	0	30	1
상하수도과	14	0	7	0	0	7
보건소	17	14	3	0	0	0
농축산과	3	2	1	0	0	0
유통지원과	2	2	0	0	0	0
농업기술과	4	2	2	0	0	0
의회사무과	0	0	0	0	0	0

[별표 2] (제62조 관련)

징계양정기준

구 분	양 정 기 준
견 책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 봉	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 직	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 고	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 (제62조 관련)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사 건 유 형	처 리 기 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감봉
2.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감봉
3.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정직 - 감봉
4.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6.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
7.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급여의 범위 :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별표 4] (제60조 관련)

징계의 감경기준

제62조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60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정 수 책 정 요 구 서

직 종				
채용목적 및 필요성				
자격기준				
요 구 인 원				
연 간 사 무 량	사 무 명	사무처리 총 소요일수	1일 평균 처리시간	처리기간 (연간근무일수)
보수지급기준 (단가, 수당 등)	구 분	소요액	산 출 근 거	
	보 수			
	수 당			
재 원				
근 무 시 간				

「남해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근로자 정수 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 관·과(기관)장 ○ ○ ○

[비고] 사무처리 총 소요일수는 처리시간 ÷ 8근무시간 × 처리기간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공무직근로자 관리대장

소속부서	직 종	인 원	월급여액	근 무 내 용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공무직근로자 관리카드

소 속			최초 근무일			사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자택 :			
				특 기	취 미			
병역 사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 상황	주 택	백만원	그 외 부동산	백만원	동 산	백만원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별		
경 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고		
포상 · 징계	포 상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 계	징계처분일	징계.형벌의 종류	처분기관
기타사항								

[별지 제4호서식] (제11조 관련)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

○○○○의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부서):

나. 업무 내용:

다.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나.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사용자는 「남해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5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가.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나.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휴일로 한다.

다. 사용자는 「남해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5조에 따라 근로일과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휴 가

가.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및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과 「남해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가. 보수는 시간급(일급, 월) 원으로 하고, 그 밖의 수당 등 구체적인 내역은 「남해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 따른다.

나.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7. 기 타

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남해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기 관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부서명) ○○○원(직종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 3.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 4. 남해군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8조제2항제1호 관련)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휴가 사용대장

년도

소 속			최초고용일			담당사무		
성 명			생년월일			연간허용 휴가일수	일	
회수	종류	사용기간	사 유	결 재				
				담당자	팀 장	부서장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연 간 사용일수		일						
연차휴가 잔여일수		일						
특기사항								

[별지 제7호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신 분 증 양 식

1. 모형

(전면)

(일련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4.5×3.5센티미터)</p>
(성명)

(후면)

신분증
소속 :
직명 :
성명 :
생년월일 :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남해군수 <input type="text" value="직인"/></p>
<p>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p>

2. 규격 : 가로 53mm × 세로 73mm

[별지 제8호서식] (제22조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 소				
소속 및 재직 기간	소 속				
	직 종				
	재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휴가원

결 재	담당자	팀 장	부서장

소 속 :

성 명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 간)
사 유		
기타사항 (연락처 등)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10호서식] (제27조제2항 관련)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 20

소 속	직	성 명	생년월일	공무직 전환일	비 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동료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11호서식] (제44조제1항 관련)

□ 는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 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 . . .			14일
소 속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 이어야 하며 통장사본 첨부		
총 근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 년 월 일)
중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원	퇴직금 청구사유	<input type="checkbox"/> 퇴직() <input type="checkbox"/>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20 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제55조제2항제1호 관련)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 속		직종	
		한자		생년 월일		재직 기간	
	주 소						
징계 사유							
징계 의결 요구 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제55조제2항제3호 관련)

확 인 서

	①소 속	②직 종	③성 명			
1. 인적사항	(현재)	(현재)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중점 정화대상 비위관계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 위 해당여부	①공 적 사 항			②징 계 사 항		
	포상일자	포상종류	소 속 부 서	일 자	종 류	소 속 부 서
	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 소 소 행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 으로 기재					
5. 기 타	* 정상 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 위)			(인)

[별지 제16호서식] (제56조제1항제5호 관련)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부 서	② 해 당 직 무	③성 명
④주 문		
⑤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남해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제57조제1항 관련)

출석 통 지 서

인 적	①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③직종	
사 항	④주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남해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절취선)

진술권 포기서

인 적	①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③직종	
사 항	④주소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인)</p> <p>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p>					

[별지 제18호서식] (제59조제2항 관련)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	① 소속부서	② 해당 직무	③ 성 명
④의결주문			
⑤이 유			

년 월 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

- 위원장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고 시

남해군 고시 제 2020 - 46호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남 해 군 수

1. 실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사업위치 : 남해군 서면 남상리 1680-2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1식(L=116.0m)
- 사 업 비 : 500백만원(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 사업기간 : 2020. 4. ~ 2020. 1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남해군 재난안전과 비치 및 열람 가능

4.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 타부서 및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없음

5.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6. 연차별 투자계획

사 업 명	구분	합계	'19년까지	'20년 추진	비 고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내용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사업비(백만원)	500	0	500	
	국비	250		250	
	도비	75		75	
	군비	175		175	

7.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토록 하고,
-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예정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 붙임 참조

9.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안전총괄과(055-860-329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순위	읍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서면 남상리	1680-2		임	8,260	2,461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599	경주김씨수은공 파종친회
2	상주면 양아리	1680-3		임	1,598	360	남해군 서면 남상리 1664	김태0
3	상주면 양아리	1680-23		임	56	56	서면 남상리 1667	이현0
합계					9,914	2,877		

남해군 고시 제2020 - 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평천(지방하천)
2. 성 명 : 김영*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4. 점용목적 : 농가창고 진입로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172, 1174-1번지
6. 점용면적 : 83㎡
7. 점용기간 : 2020. 4. 1. ~ 2025. 3. 31.

남해군 고시 제2020 - 5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42 외 2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4.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99-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42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958-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65-5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54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927-12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975-9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627-29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산135-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5-10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70-85, 161-18, 170-5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44-1	20090427	미조리(미아산 아래에 있는 마을) 해안가를 연결하는 도로임
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향리 94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435	20090427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27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18-8	20090427	현재는 폐교이나 인근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성남초등학교가 위치했던 길이었음을 반영
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리 1032-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로 191-4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연화사가 위치한 마을이라 연화동이라 불렀으나 고종때 연죽리로 고쳐 불렀다 함
1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10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로 113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섬의 모양이 발같이 생긴 데에서 유래
1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 397-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 138-11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마을 인근이 초원이었음을 의미함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1067-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523-5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1067-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523-7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산200-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732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23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461-14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정리 291-2, 29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43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7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정리 1366, 1327-32, 1327-39, 1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2197번길 152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435-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279번길 18-12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917-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1299번길 64-2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9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045-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31번길 22-3	20090427	남해대로2431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051-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길 22-22	20090427	노도는 양아리에 있는 유인도로서 옛날에 이 곳에서 배의 노를 많이 생산했다 하여 생긴 이름임. 삿갓섬이라고도 하며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로 유명한 곳임
2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62-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538번길 15-15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41, 104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794번길 33-2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20-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794번길 23-11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306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775번길 118	20091023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730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창남로284번길 27-26	20090427	창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34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96번길 24-15	20100915	화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60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로58번길 28-16	20140527	석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 지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42-1	2020-03-27	건물멸실로 인한 현행화
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35-5	2020-03-20	건물멸실로 인한 현행화

남해군 고시 제2020 - 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대사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교량확장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395-1번지
6. 점용면적 : 416㎡
7. 점용기간 : 2020. 4. 3. ~ 영구점용

남해군 고시 제2020 - 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대사천, 창선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저류시설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1125-7번지 외 2곳
6. 점용면적 : 222㎡(각각 36·186㎡)
7. 점용기간 : 2020. 4. 6. ~ 영구점용

남해군 고시 제2020 - 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금전천, 금양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상주면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번지 외 2곳
6. 점용면적 : 90㎡ (각각 30㎡)
7. 점용기간 : 2020. 4. 8. ~ 2020. 4. 7.

남해군 고시 제2020 - 61호

설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고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8.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설리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의 목적

설리에 사는 사람들과 설리의 바다·마을·입지에서 비롯한 설리만의 해법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 ‘살 수 있는 마을’, ‘찾아가고 싶은 마을’로의 변화를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16,921백만원 (국비 11,844.7, 지방비 5,076.3)

자부담 92백만원 (수익시설에 대한 자부담)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1) 고령화·독거노인 대비책

- 돌봄서비스(복지케어) 강화사업

2)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 설리건조장(건조·급냉창고) 조성사업, 해산물건조 마을기업 설립, 설리팸(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설리푸드코트 운영, 소득증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3) 주거지 공간환경 개선

- 안전마을 조성사업

4) 바다일터 환경개선

- 방파제·부두선착장 조성사업, 어구보관창고 및 어업유타 조성사업

5) 해양관광자원 기능강화

- ‘살아있는 바다박물관’ 조성사업, 해양레포츠 계류시설(부잔교) 설치사업,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6) 대명리조트와 상생

- ‘십시일방’ (한달 간 살아보기) 사업

7) 마을경관 특화

- 돌담산책 골목특화사업, 남새정원 조성사업, ‘고양이 상생마을’, 설리마을 (웹툰)기록화사업

8) 설리마을 교통모델

- 연계사업으로 추후 진행

9) 도보여행 거점화

- 도보여행 거점화 사업, 배낭픽업서비스 운영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007-1번지 일원 (설리항)

5. 사업예정기간 : 2019년 ~ 2021년 (3년간)

6. 사업의 효과

기반시설의 마련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경관지역성 회복을 통해 마을의 자체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인구감소시대에 소규모 어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일부 위탁시행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읍·면	리					
1	미조면	송정리	964-2	대	200	김○일	마을주차장 조성
2	미조면	송정리	964-3	대	38	이○자 외 7인	
3	미조면	송정리	966	답	1,358	김○욱	
4	미조면	송정리	967-4	답	208	김○욱	

9. 기 타

기본계획서는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남해군 고시 제2020 - 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과)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4. 점용목적 : 남해군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5. 점용위치 : 남해군 서변리 491번지
6. 점용면적 : 영구점용 : 0.7㎡, 일시점용 14.3㎡
7. 점용기간 : 2020. 3. 15. ~ 2021. 3. 14. (1년)

남해군 고시 제 2020 - 63호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남 해 군 수

1. 실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사업위치 :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56-2번지 외 13필지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1식

당초	변경
급경사지 정비 L=75m	급경사지 정비 L=35
토공 1식	토공 1식
배수공 : 160.5m	배수공 : 221.5m
구조물공 : 합벽식옹벽(H=4.0~7.0m) L=75m	구조물공 : L형 옹벽(H=2.0~3.8m) L=20.5m
포장공 : A=4,735㎡	포장공 : A=762㎡
부대공 1식	부대공 1식

- 사 업 비
 - 당초 : 1,020백만원(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 변경 : 209백만원(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 사업기간 : 용도변경 승인 행정절차 기간 소요

- 당초 : 2018. 7. 1. ~ 2019. 12. 31.

- 변경 : 2018. 7. 1. ~ 2020. 5.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남해군 안전총괄과 비치 및 열람 가능

4.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 타부서 및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없음

5. 사업효과 분석

○ 남치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도로, 주택과 인접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6. 연차별 투자계획

사 업 명	구분	합계	'18년까지	'19년 추진	비 고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내용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사업비(백만원)	1,020	400	620	
	사업비(백만원)	209	-	-	
	국비	310	-	310	
	국비	-	-	-	
	도비	93	-	93	
	도비	-	-	-	
	군비	617	400	217	
군비	209	209	-		

7.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토록 하고,

○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예정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 붙임참조

9.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변경 : 굵은 글씨)

순위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고현면 남치리	156-2	대	8	8	149	박남0 남해군
2	”	156-1	도	76	76	149	박남0 남해군
3	”	157	대	114	114	69 69	박언0 박언0
4	”	157-4	도	52	52		남해군 남해군
5	”	1124-2	도	76	76	국 국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6	”	158-1	도	9	9	158	조재0 남해군
7	”	159-1	도	11	11	국	남해군 남해군
8	”	166-4	도	1	1	국	남해군 남해군
9	”	166-3	전	3	3	합포구	박한0 남해군
10	”	158	대	249	249	158	조재0 남해군
11	”	167-1	잡	14	14	87	조정0 남해군
12	”	산123-5	임	1,742	1,742	737 737	박성0 박성0
13	”	산122-1	임	211	211	대사리	박지0 남해군
합계				2,566	2,566		
합계				2,566	2,566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475호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을 통하여 인·허가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남해군 자연경관 이미지 제고 추진

3. 주요내용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취락지구에서”를 “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4. 위치: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5.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
6.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③ 제1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다.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85, 팩스 860-3739, e-mail : ilgob77@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팀(전화 055-860-308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취락지구에서” 를 “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4. 위치: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5.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
6.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 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③ 제1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자연취락지구(남해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u>취락지구</u>)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4. (생 략)</p> <p>②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로 한다.</p>	<p>제16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취락지구</u>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p> <p>4. (현행과 같음)</p> <p>②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p> <p>1. <u>건축물의 사용승인일</u>부터 3년(경지정리 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p> <p>2. <u>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u></p> <p>3. <u>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u></p> <p>4. 위치: <u>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u></p> <p>5. 높이: <u>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③ ~ ⑤ (생 략)</p>	<p>6.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p> <p>③ 제1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다.</p> <p>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0 - 492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39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상주 벽련	170,500	2020. 4. 4. 2030. 4. 3. (10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495번 나길 3	송경석	재개발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61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상주 벽련	170,500	2010.04.04. 2020.04.03. (10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495번 나길 3	송경석	

남해군 공고 제2020 - 50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박홍* 외 2인	주소	경남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소하천명	장항천, 개린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서상리 989-3번지, 창선면 가인리 749번지		
	면적	1㎡, 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4. 2. ~ 2025. 4. 1.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 배수관로		

남해군 공고 제2020 - 50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 (건설교통과장)	주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소하천명	남양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175번지		
	면적	10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4. 6. ~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공작물의 설치(저류시설 설치)		

남해군 공고 제2020 - 528 호

남해군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 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재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
-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 및 5개월 이내로 변경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 및 5개월이내 신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4월 3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 상하수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642, 팩스 055-860-3751
이메일 lyuoh@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전화 055-860-3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및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p> <p>4.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p> <p>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p> <p>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0 - 528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도급수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 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추가(안제20조제2항)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Tel) 055-860-36423, Fax) 055-860-375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사용요금등의 감면) ① (생 략)</p> <p>② <u>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u></p> <p>③ (생 략)</p>	<p>제20조(사용요금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 음)</p> <p>② <u>조례 제4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 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소상공인 수도요금 등 감면 신청서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현)상시근로자 명	
※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수도 현황	수도요금 부과업종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대중탕용	수용가번호 (관리번호)
	※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p>수도요금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감면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에 기재한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 1]에 따른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개인정보 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p>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p>「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		

남해군 공고 제2020 - 528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의 국가 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의 감면사항 추가 명시(안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 1) 감면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의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시 군내 사업장의 소상공인
 - 2) 감면율 및 기간 : 50% 이내, 5개월 범위 내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4월 3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상하수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333, 팩스 055-860-375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전화 055-860-3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공급받아 재이용하는 자
-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사항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7]

현 행	개 정 안																																		
<p>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1조제2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업 종 구 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감 면 비 율</th> </tr> <tr> <th style="width: 30%;">중수도</th> <th style="width: 30%;">재이용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정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업무용·영업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육탕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p> <p style="margin-top: 10px;"><계산 예></p> <p>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p> <p>=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p> <p>= 80원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p>	업 종 구 분	감 면 비 율		중수도	재이용수	가정용	-	30%	업무용·영업용	60%	15%	육탕용	40%	15%	산업용	60%	30%	<p>중수도·빗물이용시설·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1조제1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업 종 구 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감 면 비 율</th> </tr> <tr> <th style="width: 30%;">중수도· 빗물이용시설</th> <th style="width: 30%;">재이용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정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업무용·영업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육탕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p> <p style="margin-top: 10px;"><계산 예></p> <p>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p> <p>=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p> <p>= 80원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p>	업 종 구 분	감 면 비 율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재이용수	가정용	-	30%	업무용·영업용	60%	15%	육탕용	40%	15%	산업용	60%	30%
업 종 구 분		감 면 비 율																																	
	중수도	재이용수																																	
가정용	-	30%																																	
업무용·영업용	60%	15%																																	
육탕용	40%	15%																																	
산업용	60%	30%																																	
업 종 구 분	감 면 비 율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재이용수																																	
가정용	-	30%																																	
업무용·영업용	60%	15%																																	
육탕용	40%	15%																																	
산업용	60%	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p> <p>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p> <p>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p> <p>4. (생략)</p>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21조(감면 등) ① ----- ----- ----- -----.</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p> <p>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p> <p>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사용요금의 50% 이내</p> <p>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p> <p>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공급받아 재이용하는 자</p> <p>4. (현행과 같음)</p> <p>② ----- 따른 ----- ----- -----.</p>

<신 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53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주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소하천명			
		은점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77번지		
	면적	490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0. 4. 10. ~ 영구(공사기간: ~ 2022. 3. 17.)		
	목적 및 사유	국도3호선 물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남해군 공고 제2020 - 53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지역활성과)	주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 번길 12
	소하천명	중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서상리 1684번지		
	면적	47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0. 4. 10. ~ 영구(공사기간: ~ 2020. 9. 30.)		
	목적 및 사유	소하천 주변 안전난간 설치(L=454m)		

남해군 공고 제2020 - 532호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창선단항공영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남해군고시 제2017-6호(2017.01.25.)로 고시된 창선단항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결정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 및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14.

남 해 군 수

-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2.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454)
- 3. 남해군관리계획(교통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붙임참조
- 4.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 및 건설교통과(☎055-860-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교통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주차장	창선면 대벽리 160 일원	18,280	증)3,501	21,781	남해군 고시 제2017-6호 (2017.01.25.)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주차장	구역변경 (증: 3,501㎡)	○ 지난 2017년 결정된 군계획시설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전 군관리계획 (교통시설: 주차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남해군 공고 제2020 - 534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34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20.04.13 2030.04.12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65번길 18-9	김대련 외 2명 (강정련, 김서유)	제128호 재개발

※ '19/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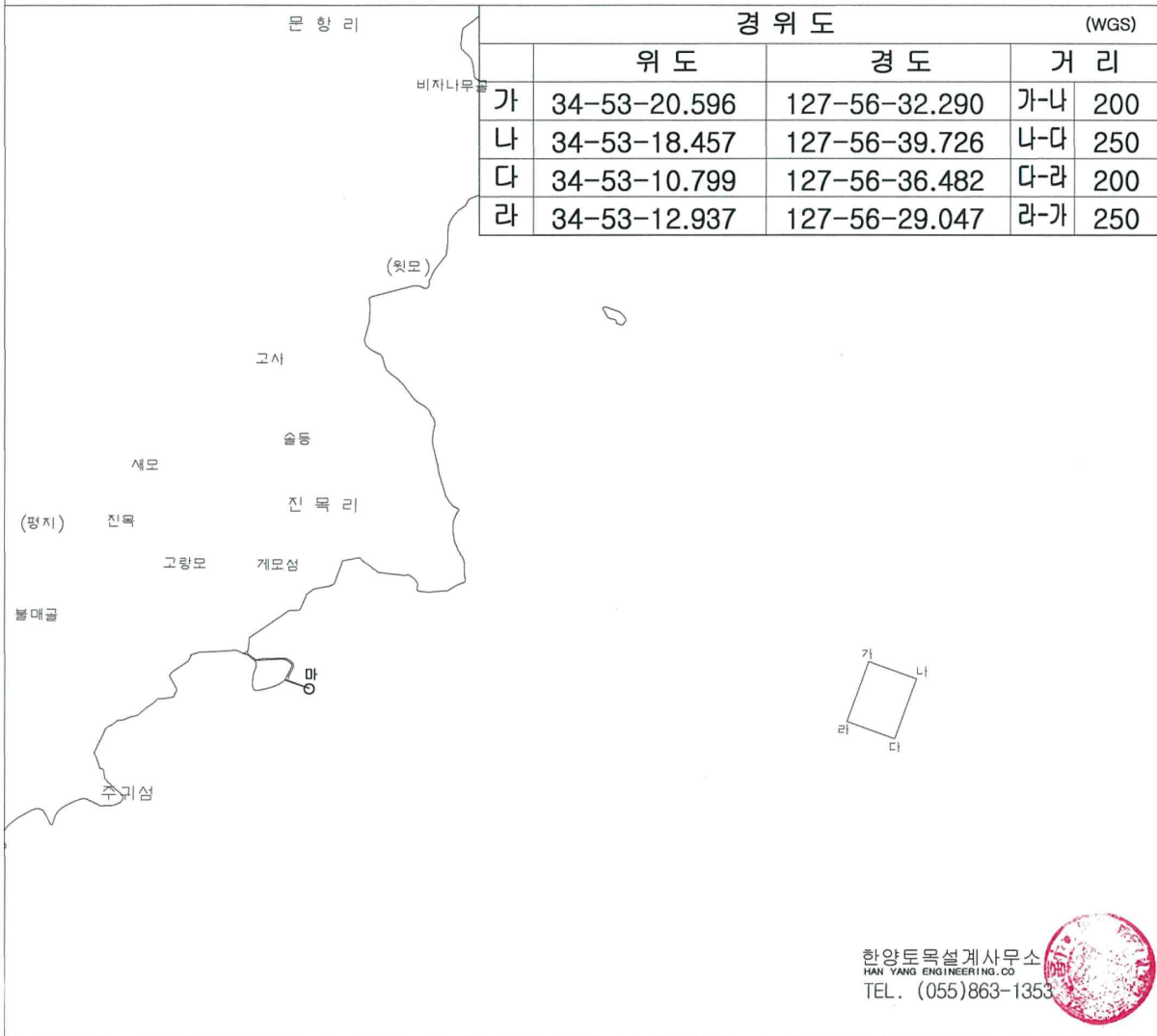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28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10.04.13 2020.04.12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65번길 18-9	김대련 외 2명 (강정련, 김서유)	

남해양식 제 534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34-53-16.351, E127-55-06.636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 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3